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 영 도(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

1. 들어가며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약 106백만건 중 공개 약 41백만건(39%), 부분공개 약 30백만건(28%), 비공개 약 35백만건(33%)임
- 이 중 일반기록물 약 87백만건 중 공개기록물은 약 23만건(26%)임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 현황(CAMS기준, '19.6.30.)>

구분	소장량 합계	일반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총독부 기록물	정부 간행물	해외 기록물	역사 기록물	행정박물	민간 기록물
철	6,102,918 (100%)	4,504,541 (73.81%)	340,086 (5.57%)	853,288 (13.98%)	295,914 (4.85%)	29,210 (0.48%)	1,658 (0.03%)	32,255 (0.53%)	45,966 (0.75%)
건	106,918,699 (100%)	86,942,059 (81.32%)	1,923,972 (1.80%)	16,759,545 (15.68%)	295,913 (0.28%)	294,273 (0.28%)	421,090 (0.39%)	67,417 (0.06%)	214,430 (0.20%)
	공개	40,776,988 (38.14%)	22,944,558 (26.39%)	1,188,763 (61.79%)	15,554,322 (92.81%)	285,654 (96.53%)	194,059 (65.95%)	-	188,573 (87.94%)
	비공개	35,696,264 (33.39%)	34,483,692 (39.66%)	6,090 (0.32%)	1,204,012 (7.18%)	668 (0.23%)	1,692 (0.57%)	11 (0.00%)	99 (0.05%)
	부분 공개	29,715,836 (27.79%)	29,510,120 (33.94%)	82,571 (4.29%)	8 (0.00%)	9,588 (3.24%)	91,981 (31.26%)	20 (0.00%)	21,548 (10.05%)
	미분류	729,611 (0.68%)	3,689 (0.00%)	646,548 (33.60%)	1,203 (0.01%)	3 (0.00%)	6,541 (2.22%)	0 (0.00%)	67,417 (100.00%)

- '07년부터 '18년까지 약 81백만건의 공개재분류를 추진하였으나, 전부공개는 약 17.8백만건(22%)이며 부분공개.비공개가 약 63.2백만건(78%)을 차지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실적('18. 12. 31. 기준)>

구 분		합계(건)	공 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계	합 계	81,258,928	54,297,229	17,886,873	36,410,356	26,961,599
		100%	66.8%	22.0%	44.8%	33.2%
	30년 미경과	26,607,120	3,616,573	1,110,586	2,505,987	22,990,547
	30년경과	54,651,808	50,680,656	16,776,287	33,904,369	3,971,052

본 토론문은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의 실효성 문제보다는 발표문에 충실하여 절차 개선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2. 공개재분류 현황과 업무절차 개선방안

(1) '18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발표문 8페이지)

- 전체공개 비율 : 30년 미경과 18.4% → 30년 경과 6.5%
- 부분공개 비율 : 30년 미경과 19.5% → 30년 경과 80.3%
- 비공개 비율 : 30년 미경과 61.8.% → 30년 경과 13.2%

(질문)

- 생산된 지 30년 경과 기록물의 전체공개 비율이 30년 미경과 기록물보다 낮은 이유?
예를 들어 30년 미경과 5년주기 재분류에서 비공개 5호가 공개로 전환된 것인지?
- 30년 미경과 5년주기 재분류에서 비공개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부분공개가 가능한 것을 비
공개로 분류한 것은 아닌지? 공개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2) 공개재분류 기준 개선

○ 기록물의 유형 분류

- 6개의 공통업무, 17개의 고유업무에 대해 하위유형, 세부유형

(질문) 기록물 유형분류 기준은? 정리·기술 또는 BRM 기능분류와 연계 필요

(질문) 유형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철·건 제목만 보고 또는 내용 검토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한계

: 소장 기록물 중 다수가 신분, 재산 관련 증빙기록 또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음

: 실제 공개재분류에서 ~계획, 검토서 등 정책문서에 대한 유형분류가 어려움

: 이에 소장 기록물 분석을 통한 기록물 유형 분류의 세분화 필요

다만, 이와 같은 AM에서의 유형분류는 RM에 적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이유는 RM의 경
우 보존기간이 5년, 10년 등 한시기록물이 많아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

- (질문) <표 5>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12페이지) : 30년 미경과 또는 30년 경과 적용 여부
30년 경과와 30년 미경과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이 같은지?

(3) 既재분류 기록물 유형의 재분류 절차 간소화

○ 재분류 심의 이력이 있는 동일 유형의 기록물은 기준서나 생산기관 의견조회 생략

- 매년 공개재분류 대상량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되나,

- 이렇게 되면 기심의 이력이 있는 유형의 기록물은 공개값이 고정화가 됨

개인정보는 별개이지만 나머지는 판례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심의 이력이 있더라도 적극
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수 있음. 이는 기준서 작성과정에서 판단 가능함

(4) 비공개기록물 상한제도

○ 기록물 유형별 비공개 상한기간을 책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재재분류를 유예하는 상한제
도 마련(14페이지)

- 이는 비공개기록물 상한제도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됨

- 공개재분류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개를 위한 재분류를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비공개가 유지되는 기록물은 특정의 지정된 기간이 도래하면 공개

예) 국가안보, 국방통일, 외교 등은 보호기간 도래를 기다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공개재분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CAMS 기능 개선

○ 공개재분류의 시스템화에 적극 동의

- <그림 5> 추진 대상량 검색 화면 구성(16페이지)

: 5년주기 재분류에서 30년 경과와 30년 미경과 구분이 필요

- <그림 6> 기록물 유형 관리 및 검색 기능(17페이지) : 새로운 유형의 추가 기능 필요

○ CAMS에 수시재분류, 기획재분류 기능 추가(대상 선정, 재분류 절차 등)

3. 나오며

① RMS와 CAMS의 공개재분류 이력 연동 방안 검토

- RM 단계의 공개재분류 이력 및 주요 내용(기준서 포함)과 CAMS 연동 검토, 메타 이관 등
- 30년 경과 재분류 시 생산기관에서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35조제4항) 관련 프로세스 정립이 가능한지?

②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개재분류 절차 검토

- 전자문서 외 데이터셋, 웹 등
- 시청각, 간행물, 민간, 해외수집기록 등

③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기반한 공개재분류 방안 검토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공개 여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현재는 철(권)단위 유형구분 및 기준서 작성, 심의 진행
-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의 경우 유형구분 및 기준서 작성의 단위는?
특정 단위과제의 경우 10여 개의 카드 생성, 수천건이 편철된 경우도 있음

④ 기록물의 생산연도

예) 과거사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경우

- 생산은 최근이지만, 그 안에 편철된 기록물은 자료 수집 차원에서 30년 경과 기록물이 다수임.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을 30년 경과 또는 30년 미경과 어디에 적용?

⑤ 공개 → 부분공개·비공개 전환(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절차 검토

⑥ 열람실(정보공개청구) 상황 고려

- 건별 재분류에서 비공개 대상정보 기재, 하지만 페이지별 비공개 대상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 건의 양이 많으면 결국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됨
- 비공개 대상정보 중 개인의 이름, 열람업무 처리과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개인(기안자, 공무원 등)도 비공개 될 수 있음. 건별 또는 페이지별 정확한 비공개 대상정보 입력 필요
- 건별 공개재분류의 실효성 문제 또는 위탁사업의 한계 검토 필요

⑦ 마지막으로, 적극적 공개를 위한 논의와 토론이 지속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듯이 공개재분류 담당자의 적극 공개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